출범 8년 '태고종' 창종…두 종단 체제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② 출범 과정
③ 출범 이후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1962년 4월 11일 공식 출범
표면은 비구대처 갈등 봉합
내부적으로 혼란·진통 여전
대처측 소송에도 최종 패소
정부, 1970년 '태고종' 인정
조계종·태고종 양종 체제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9년 개최된 '전국불교도대회'에서 대처측은 통합종단 백지화와 분리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출처=한국불교100년사

1962년 4월 11일, 우여곡절 끝에 통합종단이 출범했다. 표면적으로는 오랜 비구대처 갈등의 봉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바로 비구·대처승간 불균형이다. 정부의 개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양자간 통합은 비구승측에 편중된 구도로 일궈졌고, 대처승 측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분열은 예견된 바였다.

통합종단의 내부분열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8월 25일 처음으로 개원한 종회였다. 초대의장에는 벽안 스님이, 부의장에 경산 스님과 서각 스님이 선출됐지만, 대처승 측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종회 불참을 선언했다.

통합종단 출범을 위한 재건비상종회를 해체하고 처음으로 구성된 초대종회는 시작부터 양측 구성에 대한 논란으로 삐걱댔다. 초대종회의 의원 50명 중 비구측이 32명, 대처측이 18인이었기 때문이다. 대처승측은 양측 동일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측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자는 비구측의 안을 수용하는 등 사실상 비구측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대처측은 통합종단을 해체하고 모든 합의를 무효로 돌릴 것을 요구하며 종회 불참을 선포했다. 이어 서울 서대문에 조계종 명의의 총무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 사실상의 독자행보에 나섰다. 특히 대처승측은 10월경 서울민사지법에 '종헌 결의 및 종정추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합종단 출범을 무효로 돌리기 위한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이 소송은 1965년 6월 11일 원심에서 대처측이 승소했고, 재판부가 같은 해 9월 7일 비구측의 항소로 이어진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비구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양측은 통합종단 출범의 전제로 정부의 중재 하에, 전국 각 사찰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소송을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었으나 이 역시 통합종단 자체가 진통을 겪으면서 상당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통합종단 주류였던 비구측은 양측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처측 인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종헌을 받아들이는 경우, 본사 및 사찰의 운영권을 제공하고 종회의원 자격을 할애하는 등 회유책도 활용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10월 23일 대법원이 대처측 상고에도 최종적으로 비구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통합종단 내 양자균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막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합종단은 비구측 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대처측이 합류하면서 또다른 변화를 맞았다. 1967년 2월경 비구·대처 양측은 간담회를 열고 통합종단 조계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처측의 경우, 통합종단에 합류한 일부 세력과 양자간 불균형을 비판하는 강경세력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통합종단 합류세력은 대처측 대표로서 비구측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박대륜 스님을 주축으로 한 강경세력은 이들을 비판하면서 분종을 준비해 나갔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통합종단의 완성이었지만, 내부적인 갈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었던 셈이다. 중앙에서는 통합종단 조계종이 안착했지만, 일부 주요 사찰에서는 여전히 양자간 폭력사태가 지속됐으며 종단 내 운영 또한 안정적이지 못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통합종단은 1969년 8월 경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했던 前종정 청담 스님의 탈종선언으로 그 내부적 한계가 표출되는 계기를 맞는다. 청담 스님의 탈퇴선언은 종단의 내부적 혼란을 깊이 우려해 온 결과였다. 그해 7월 종단 유신재건안을 종회에 제출하지만, 채택되지 않자 결단을 내린 셈이다. 청담 스님은 장로원장으로 복귀한데 이어, 이듬해인 1970년 종단 혼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무원장 소임을 맡는다.

한편 통합종단에 포함되길 거부한 대처측 주요세력들은 1969년 3월 종권수호 전국불교도대회 및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통합종단 백지화와 대처측의 분리를 공식선언했다. 이어 1970년 1월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을 선포한데 이어, 4월 1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박대륜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고 그해 5월 불교재산관리법에 정식 등록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8년만에 정부가 태고종을 정식종단으로 인정하면서, 한국불교는 조계종과 태고종 양대종단 체제로 완전히 안착됐다.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소유권소송, 대법원 갈까

항소심서 태고종 승소…조계종 상고 여부 관건

광주고등법원, 7월 7일 판결
조계종선암사 실체 부정취지
원심과 반대로 등기행위자엔
말소이행 결정…법리 논란도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태고종간 수년째 지속된 법적공방의 핵심판결로 주목됐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소송'의 항소심 결과, 태고종이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조계종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선암사와 윤선웅(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조계종선암사의 항고를 각하하고 윤선웅씨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결정했다.(本紙 1395호 참조)

이번 소송은 원고인 태고종선암사가 조계종선암사(주위적 피고)와 당시 주지 윤선웅(예비적 피고)씨 두축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가 원심 판결과 반대로 조계종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당시 등기행위자였던 윤선웅씨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법리적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인 판단을 피함으로서 법리적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조계종측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심판범위를 밝힌 취지에 근거해 상고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상고심에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7월 22일까지이며, 7월 20일에는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관음종 9세 종정 홍파 스님 추대법회

7월 14일 서울 묘각사서
법명 총무원장 취임식도
홍파스님 "미묘법 펴겠다"


관음종 제9세 종정 홍파 스님의 추대법회가 7월 14일 묘각사에서 봉행됐다.

대한불교관음종 제 9세 종정 추대 법회 및 총무원장 취임식이 7월 14일 오후 2시 관음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묘각사에서 봉행됐다.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원로원장 법륜 스님의 종정 추대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법륜 스님은 "영산 홍파 대종사는 관음종 총무원장 소임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 놓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최장수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종단간의 화합에 공헌했으며, 한국불교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신 분"이라며 "종정 예하의 덕화로 이 시대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반목의 물줄기를 한 곳에 흐르게 하고 역사속에 한국불교의 새지평을 여는 천인사로 시공에 무애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추대사에 가름했다.

이어 종정에 취임한 홍파 대종사는 "시절 인연이 부득하여 산승이 오늘 법좌에 오르게 되었다. 불보살님과 은법사이신 태허조사님, 그리고 여러 대중은혜에 감사하는 소회를 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 하겠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이어 홍파 종정 스님은 "천태 지의 스님, 고려 제관 스님, 왕자 의천 스님, 경운 원기 스님, 그리고 태허 조사님, 제가 반드시 미묘한 법을 더욱 펴겠다"고 결의에 찬 수락 법어를 내렸다.

이날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법명 스님도 취임사를 통해 "종정예하께서 반석을 다져놓은 관음종단의 위상에 흠이 안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불교의 신앙적 가치가 드리워져서 성취중생과 엄정 불토를 실현하는데 소홀함 없이 심혈을 기울여 종단과 불교 중흥에 이바지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의원,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최윤섭 관음종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본지 현대불교신문 구태서 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관음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추대위원회를 소집하고 홍파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했다. 관음종 종정은 2010년 죽산 스님 입적 이후 12년간 공석이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종회, 총림·원로회 변화 쟁점

7월 19일 개회 예정 종회서
총림 방장자격 등 논의 예정

출가장려정책 및 총림 자격 확대 등 종헌·종법개정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가 7월 19일 개원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총림 뿐 아니라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회는 제17대 중앙종회 마지막 회기인 동시에, 조계종 총림의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할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종헌에 따르면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등 4대 수행기관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출가자수가 급감하는 상황임을 염두해, 이를 '3개 이상 수행기관'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 원로회 권한에 '종단 중요종책 심의권'을 신설하고 '2급 이상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로 변경하는 종헌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6일 원로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총림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의 연동법안으로 총림법 개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림법 개정안은 종헌 제103조 개정안을 준용하는 한편, 방장 자격요건을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하고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돼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10·27법난 추념

전국승려문예공모전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을 급습하여 스님 및 불교계 인사들과 민간인 관계자들을 강제연행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였고 신성한 법당을 짓밟는 등 불교계를 강제로 탄압을 하였습니다. 명분은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국승려문예공모전의 취지

10·27법난이 발발한지 42년이 지났지만 아픈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듯이, 10·27법난 역시 그 고통과 슬픔을 겪은 스님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상 그저 옛날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절하고 아픈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출가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예작품을 통해 10·27법난피해에 대한 치유와 종교적 평화정신을 널리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제
• 10.27법난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등
•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

공모일정 : 5월 25일 ~ 8월 19일
공모대상 : 스님(학인스님 포함)
공모부문 : 시(3편 이내) / 산문 (1편 이상)
제출규격 : 시 산문 모두 '한글' 파일작성(제목 15p, 본문 11p)
제 출 량 : 시 자율 / 산문 A4 2페이지 이상
시상자 발표 : 9월 초(예정)
시 상 식 : 10.27법난 추념법회 중 진행예정
참고자료 : YouTube 10.27법난

시상내역(16편 / 15,000,000원 상금)

구분	시상수	부상	총상금
대 상	2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4편(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400만원
장려상	10편(부문별 각 5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500만원

접수방법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8)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www.ibulgyo.com)
• 우편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전국승려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주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시 시·산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일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3회 전통문화체험연수원장배 전국대학생 '규봉암의 봄'